

아동학대 NO!

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!

여러분의 관심으로 우리 아이의 미소를 지켜주세요

1

정서 학대

소리를 지르거나, 욕설과 고함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통제하려고 하는 아동의 정서를 해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



2

신체 학대

구타, 폭력,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 폭력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 및 처벌은 아동학대입니다



3

성 학대

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



4

방임 학대

아동의 의식주, 의무교육, 의료적 조치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



아동학대 신고(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)

아동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즉시 관할 경찰서 119 및 과천시 가족아동과 02)3677-2277~8에 신고해주세요!